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2025학년도부터 가능해집니다.

※ 4대 과학기술원법 학사규정(1건) 및 시행령(3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일(화)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 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KAIST 학사규정, GIST·DGIST·UNIST 시행령 등 총 4개 대통령령

동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이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되었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되며, 진로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일반고	과학고	영재학교
현행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제를 통해 조기 진학 可		不可
개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제를 통해 조기 진학 可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동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여, 2024년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 서울과학고, 인천과학예술평재학교,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평재학교(이상 공립), 한국과학영재학교(국립)

현재 기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의 7개 영재학교는 동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특례자도 각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제도의 범위에 추가되었다. 영재교육특례자 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1차례만 활용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에 따라 영재교육특례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 조치로서 이번 신규 제도 도입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과학영재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속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사항을 사전에 대비하여,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책임자	과 장	정연웅 (044-202-4830)
		담당자	사무관	윤태량 (044-202-4832)

(아래 내용은 공통 사항으로, 일부 내용은 과학기술원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자격

- **(현행)**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추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특례자
※ 구체적인 세부 절차·방법 등은 하위규정(학칙 등)으로 설정 예정

□ 제출 서류

- △지원서, △학교장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고교 Profile,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등

□ 선발 절차 및 방식

- 희망 학생 신청 → 과학영재선발위원회 심의 → 입학자격 부여
→ 입학전형 절차 응시
- 각 과학기술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능력 및 영재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과학영재 선발 여부를 확정

□ 선발 효력

- 동 제도에 따라 과학영재로 선발時, 입학자격이 부여·인정되어 각 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에 지원 가능(당해 연도, 해당 기관에만 효력)

□ 학력 인정

- 동 제도를 통해 각 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등록時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초·중등교육법 근거)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원법 학사규정」과 동일(조문번호 등 일부 차이)

현행	개정안
제16조(입학자격) ①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1. 2. (생략) 3. <u>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u>	제16조(입학자격)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 는 사람</u> <u>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 정자</u> <u>나. 「영재교육 진흥법」 제6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 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 학 중인 사람</u> <u>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 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